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960호)

2021.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 영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영업정지 신설	2
2.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6
※ 참고자료	8
1. 과태료 부과기준	8
2.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0. 26.

3. 회 부 일 : 2021. 10.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대표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짓표시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과태료 처분 등에 지나지 않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 건수는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8조).

Ⅲ. 검토의견

1.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영업정지 신설

현행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 농수산물의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정명령이나 위반 농수산물의 거래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 ----- ----- ----- -----.

현 행	개 정 안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 2. (생 략)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3.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제5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수입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산 김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등 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농수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수출	농산물	6,047	5,985	6,146	6,675
	수산물	2,329	2,377	2,505	2,306
	축산물	341	417	460	496
	임산물	439	524	418	393
수입	농산물	18,594	19,903	19,876	20,669
	수산물	5,268	6,125	5,794	5,621
	축산물	6,603	7,522	7,786	7,627
	임산물	7,097	7,877	6,642	5,983

자료 : e나라지표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매년 1,300건~1,600건으로 유지되고 있음.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건수, 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실적	금액	실적	금액	실적	금액	실적	금액
법 제18조제1항1호 (원산지 미표시)	1,401	39,260	1,440	37,334	1,579	42,633	1,302	37,825
법 제18조제1항2호 (표시방법 위반)	28	907	23	640	39	1,225	14	455
법 제18조제1항3호 (임차인 등 위반행위 방지)	-	-	1	100	-	-	-	-
법 제18조제1항3호의2 (방송 채널 등 입점업체 위반행위 방지)	-	-	-	-	-	-	-	-
법 제18조제1항4호 (원산지 조사열람·수거 거부·방해·기피)	1	100	-	-	1	100	-	-
법 제18조제1항5호 (영수증 미비치 등)	14	280	5	100	13	260	15	300
합계	1,444	40,547	1,469	38,174	1,632	44,218	1,331	38,58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의 영업정지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법제처·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 개선 세부안」을 마련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부안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의무위반 및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하나의 제재만으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도 제정 당시(2010. 2. 4. 제정) 원안에는 영업정지¹⁾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음.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다는 점과 함께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영업정지 조항은 제정안 입법 당시 삭제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0571)

제9조(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현행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임(안 제18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태료) <신설>	제18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중요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벌금 및 위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과 구분됨.

개정안은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증가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가 지정하는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다른 법률에서도 최대 1천만원(2.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6

※ 참고자료

1.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1) 삭제 <2017. 5. 29.>				
2)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8)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 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 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 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 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법령별 (소관부처)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금액 (만원)
원산지표시법 (공동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
소비자 기본법 (공정위)	○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 광고기준을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1,0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공동법률)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종자산업육성법 (농식품부)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1,00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수부)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00
화훼산업법 (농식품부)	○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농업기계화법 (농식품부)	○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축산법 (농식품부)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표시방법 위반	500
축산물이력법 (농식품부)	○ 축산물 등을 판매하면서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0
	○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400
친환경농어업법 (공동법률)	○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표시를 한 경우	500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
고압가스법 (산자부)	○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
수산물유통법 (해수부)	○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식품표시광고법 (식약처)	○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영화비디오법 (문화부)	○ 비디오물에 등급 또는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식품부)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90